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1 디지털 전파·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

-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
- 전파감시, 전파교란 대응
- 전파혼신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
-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
- 국내·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활동
-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단속

2 전파·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및 탐지업 등록·관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용 준수 관리·감독
- 무선국 전자파 관리
- TV방송 수신장애 조사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 사실조사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

3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 무선국 허가·검사, 방송국 검사
- 공중케이블 점검
- 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이행 점검
-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 전기통신설비 제공 이행실태 관리
- 전파환경 수탁 측정 및 누설전자파 조사
- 정보통신방송분야 비영리법인 허가·감독

4 국제협력 및 전파교육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어린이 전파교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민원상담 080-700-0074 / 02-3400-2000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북부사무소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2-2680-1700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암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 당진사무소	(35283)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2-520-410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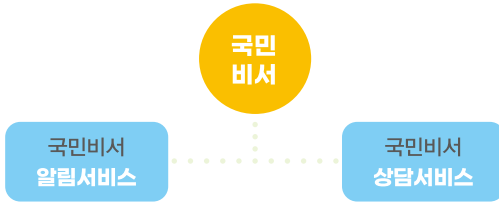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민원 고지 알림 서비스 이제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란?

국민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개인맞춤형) 국민의 질문사항을 상담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업무도 모바일 고지·알림 국민비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 시행일자 : 2022년 12월 16일
- ※ 대상 : 개인 무선국 시설자

국민비서를 통해 무선국 관련 민원 안내·처리결과를 간편하게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 무선국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 무선국 재허가 안내
- 무선국 관련 민원 처리결과 통보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센터

☎ 080-700-0074(무료)

무선국이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선국이라 합니다.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무선국은 허가 또는 신고 후 운용해야 합니다.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외

◇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무선랜, 무선전화기, 무선도난 경보기, 완구 조정기 등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벗어나 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신청방법 ◆

국민비서 홈페이지 가입

수신받을 알림앱 선택

알림 서비스 선택 또는
국민비서 알림앱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국민비서 알림앱 종류 ◆



※ 알림앱은 계속 확대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의 「이용가이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